

# 전기제품 PL상담센터 발표

지난 6월중 이루어진 PL상담건수는 모두 28건이었으며, PL상담록과 제품별 회의내용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안을 발췌하여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물론 소비자 여러분의 많은 참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2006. 6. 1~6. 30)

일자	상담품목	상담방법	상담 내용	조치 사항
6.3	전기온수기	전화	소비자가 임의로 제품을 개조하여 사용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체는 책임을 져야 하는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6.7	선풍기	내방	대형 양판점 납품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약관형태의 강제 계약서를 강요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조정이나 기본 계약서 작성요령 검토 필요
6.14	전기냉온수기	전화	납품받는 업체에서 PL보험가입 및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품업체에서 책임지라는 계약서 강요	부품업체와도 기본계약을 철저히하여 문서로 서로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정해 놓아야함
6.16	멀티탭	내방	사용자의 오용/남용으로 인한 사고 피해서 보상처리는?	정상 참작하여 과실상계적용 : 대개의 경우 8:2 / 7:3(예상) (제조자의 과실을 경감)
6.20	공기청정기	내방	공기청정기 팬에 젓가락을 고의로 삽입하여 제품 파손을 냈을 경우 업체는 보사를 해주어야 하는가?	사용자가 고의로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업체의 이미지를 위하여 제품교환 및 보사를 해주어야 한다.
6.22	전기냉온수기	내방	주의 및 경고 label부착시 공간부족으로 붙으기가 힘들때의 방법	사용설명서에 모두 적어 놓는 것도 바람직하다.
6.23	전기냉온수기	전화	완제품 제조업체와 부품업체의 책임의 한계는?	보험/피해보상(책임한계)
6.28	전기매트	내방	-PL보험과 관련하여, 후에 구상권 획득권 - 사용상 주의사항 작성의 애로점	- 계약을 작성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PL보험 가입권유 - 부분적으로 품목별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표시사항 검토중